

(중소벤처기업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정기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

품목별	규격	단위	단가(원)	비고
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				
경영 안정 지원	소상공인	업체	3,000,000	
	중소기업	업체	6,000,000	

2.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

품목별	규격	단위	단가(원)	비고
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				
건축물	전파(100㎡ 미만)	동	7,500,000	반파는 50%
	전파(100~150㎡ 미만)	동	15,100,000	
	전파(150~200㎡ 미만)	동	22,600,000	
	전파(200~250㎡ 미만)	동	30,100,000	
	전파(250~300㎡ 미만)	동	37,700,000	
	전파(300~350㎡ 미만)	동	45,200,000	
	전파(350~400㎡ 미만)	동	52,700,000	
	전파(400~450㎡ 미만)	동	60,200,000	
	전파(450~500㎡ 미만)	동	67,800,000	
	전파(500~550㎡ 미만)	동	75,300,000	
	전파(550~600㎡ 미만)	동	82,800,000	
	전파(600~650㎡ 미만)	동	90,400,000	
	전파(650~700㎡ 미만)	동	97,900,000	
	전파(700~750㎡ 미만)	동	105,400,000	
	전파(750~800㎡ 미만)	동	113,000,000	
	전파(800~850㎡ 미만)	동	120,500,000	
	전파(850~900㎡ 미만)	동	128,000,000	
	전파(900㎡ 이상)	동	135,500,000	
기계설비	전파	업체	3,000,000	

제3조(재검토기한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